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비밀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한정(안 제12조)

나. 비밀의 보호 및 관리 강화

- (1) 기관 또는 소관업무의 특성에 맞게 서약서 징구(안 제18조)
- (2) 각 기관의 조사·통보된 비밀소유현황 비공개(안 제24조)
- (3) 대외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시 서약서 징구(안 제55조)
- (4) 보안교육(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강화(안 제60조)

다. 보호지역 출입에 관한 사항

- (1) 보호구역→보호지역 변경(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 (2) 제한구역(공공택지조사과) 추가(안 제40조)
- (3) 보호지역 출입을 허가에서 승인으로 개정(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공무원 또는 임시직원으로”를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57조”를 “규칙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받아야”를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Ⅱ급비밀”을 “Ⅱ급 및 Ⅲ급 비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서약서”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서약서”로 한다.

제2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본	보호기간 : (일자 / 경우) 이관 /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존기간 : 년
사본	보호기간 : (일자 / 경우) 파기 / 일반문서로 재분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9조 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설정)”을 “(보호지역의 설정)”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를 “제34조”로,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교통정보센터”를 “국가교통정보센터, 공공택지조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을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출입)”을 “(보호지역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허가률”을 “승인을”로, “허가 전”을 “승인 전”으로, “허가 하여야”를 “승인하여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경계)”를 “(보호지역의 경계)”로 한다.

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약서 징구

제60조제1항 본문 중 “연”을 “반기별”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4. 제42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신원조사) ①·② (생략)</p> <p>③ 신원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u>공무원 또는 임시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u></p> <p>④ 신원조사는 <u>규칙 제57조</u> 각 호의 사항을 첨부(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한다)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2조(신원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u>----- ----- . <단서 삭제></p> <p>④ ----- <u>규칙 제57조제2항</u> ----- ----- ----- ----- .</p>
<p>제15조(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대책) ① (생략)</p> <p>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u>작성하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u></p> <p>1.·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5조(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대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작성하</u> <u>여야</u>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생략)</p>	<p>제16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현행과 같음)</p>

략)

②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임명 즉시 장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①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가 속하는 소속의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서약서 1통

②·③ (생략)

제22조(예고문)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규칙 제18조를 따른다.

원본	보호기간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보존기간 : 년
사본	파기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제24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본부 각 실·국, 정책관(기획관)실 및

행과 같음)

② -----

-- Ⅱ급 및 Ⅲ급 비밀 -----

-----.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서약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예고문) -----

-----.

원본	보호기간 : (일자 / 경우) 이관 /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존기간 : 년
사본	보호기간 : (일자 / 경우) 파기 / 일반문서로 재분류	

제24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① ---

소속·산하기관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경유문서의 처리)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소속·산하기관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사이버안전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9조(경유문서의 처리)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40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
제34조 -----
보호지역-----

1. (현행과 같음)
2. -----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무전실·모사전송실), 기록관, 국가교통정보센터

3. (생략)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1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 ② (생략)

제42조(보호구역의 출입) 보호구역의 출입은 다음과 같이 통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여야 함

나. 다. (생략)

제43조(보호구역의 경계) ① ~

----- 국가교통정보센터, 공공택지조사과

3. (현행과 같음)

② ----- 보호지역-----
-----.

제4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 승인 -----
----- 승인 전 -----

----- 승인하여야 -----

나. 다. (현행과 같음)

제43조(보호지역의 경계) ① ~

③ (생략)

제55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 ③ (생략)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서약서 징구(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⑤·⑥ (생략)

제60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3조(보안사고) ① 규칙 제64조의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약서 징구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보안교육) ① -----

-----반기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보안사고) ① -----

-----.

1.·2. (현행과 같음)

<p>3. <u>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파괴</u></p> <p>4. <u>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u></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 ② ~ ⑤ (생략)</p>	<p>3. <u>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u></p> <p>4. <u>제42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u></p> <p>5. ----- <u>제4호</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